

「등불샘 학원」 해사법규 추록본

12 어촌어항법

☞ 추록본

제4장 어항개발

■ 어항의 지정권자(제16조)

■ 지정권자

1. 국가어항 : 해양수산부장관
2. 지방어항 : 시·도지사
다만,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한다. [\[26.7.1.시행\]](#)
☒ “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” 문구 삭제
3.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: 시장·군수·구청장